(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경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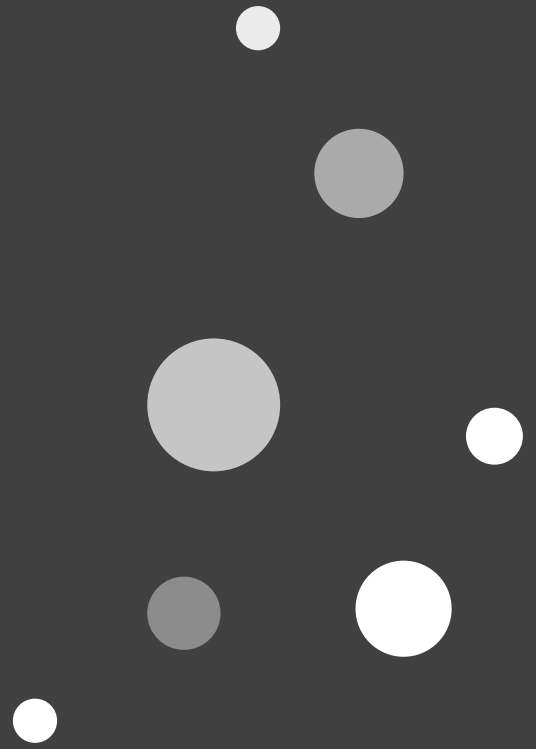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content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전문인력지원사업
-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경영지원

- 기초컨설팅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공통사항

예비 3년 중 2년 , 인증 5년 중 3년 지원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기간 종료시까지만 지원

다른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종전 재정지원사업 이력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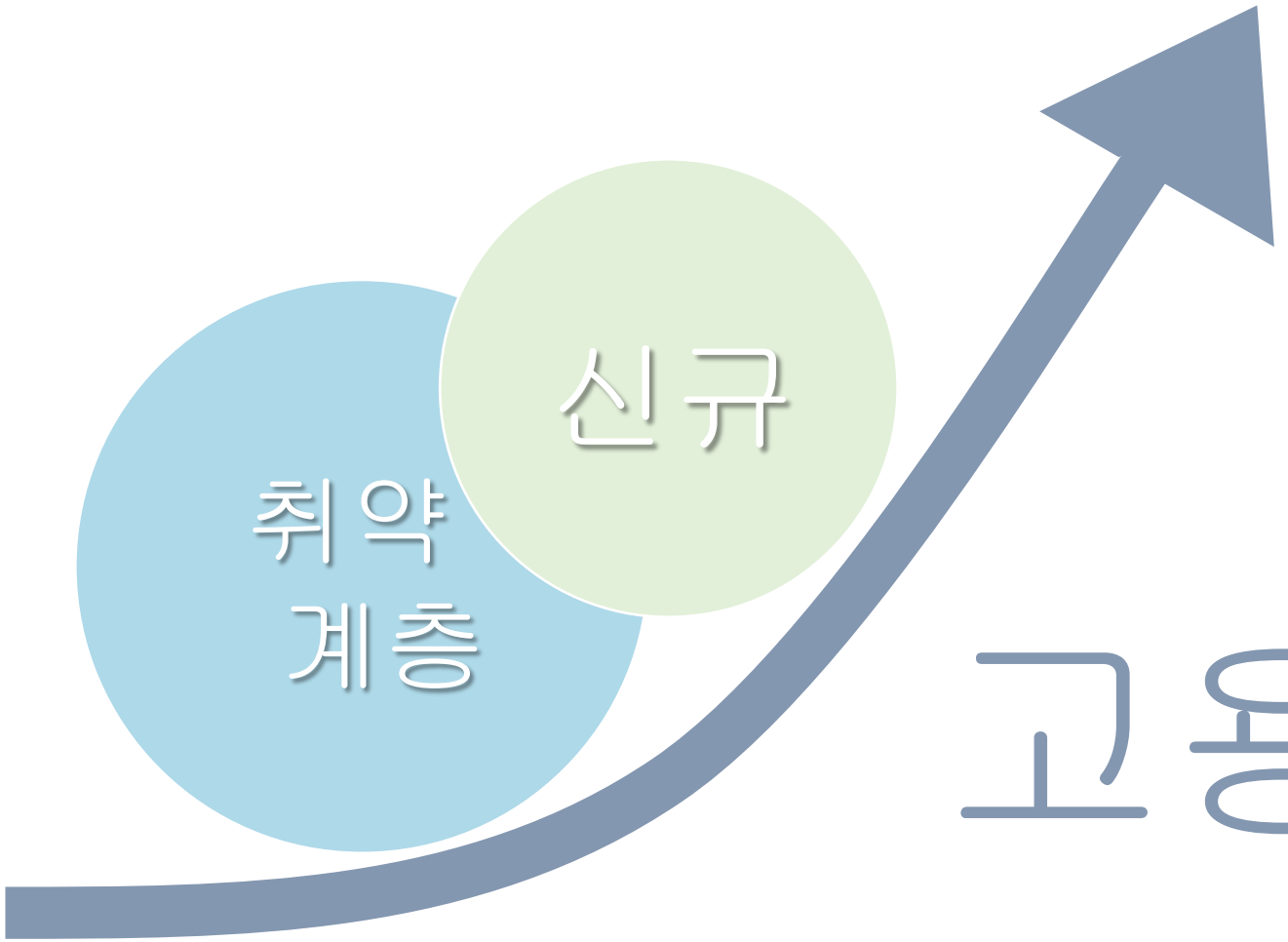

- 취약계층 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 50% 이상
  다른 유형은 30%

지원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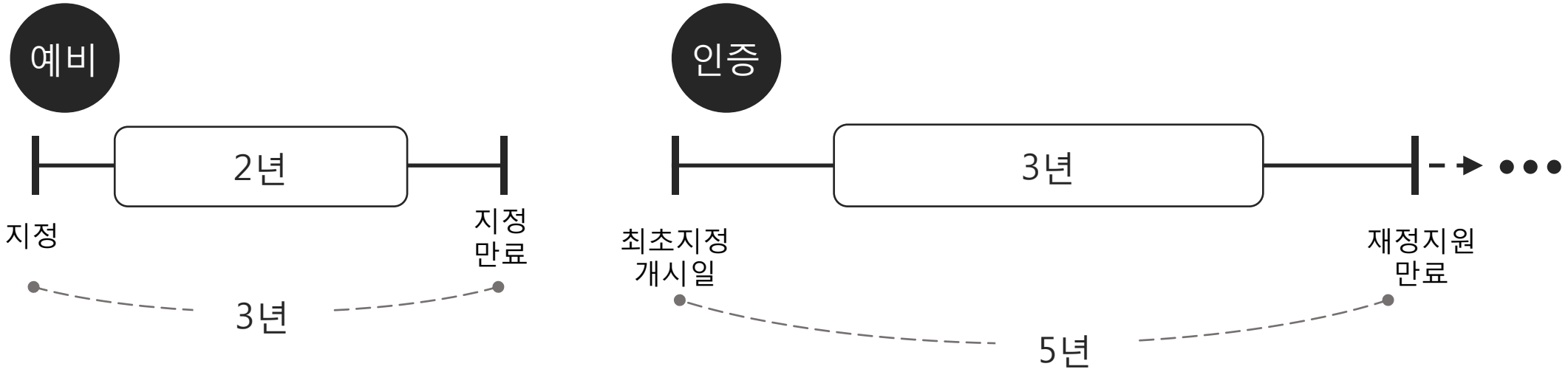

* 예비는 지정기간(3년) 이내 2년 , 사회적기업은 최초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지원

* 예비는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기간 종료시까지만 지원함

01 일자리창출사업

배정 인원

1인 ~ 50인 이내

역량 및 사업모델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비율 높으면 초과 지원 가능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연1회 이상

공모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지원기관 자치단체	해당 구청	해당 구청 지원기관	광역단체	해당 구청
신청기관 사전 상담	**신청서 제출**	**현장실사**	**심사, 선정**	**약정 체결 참여자 승인**

참여 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부처형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 1년 약정이며 재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참여 제외 대상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 해당
   - 중증장애인 20% 이상 고용

2.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미만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30% 미만

3.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4.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대 지원기간을 받은 기업

참여 제외 대상

5.
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업

- 바우처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할 때,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6.
계절적, 일시적 사업이거나 교육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7.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 수행 기업

-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70% 이상

8.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9.
기타 조례, 규칙 등으로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기초자치단체장선정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

참여 제한자

1.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예외

주 30시간 미만,
참여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경우,
참여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자

2.

약정개시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자

예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위해 공고일 이후 채용한 자
- 다른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채용 **6개월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 주15시간 미만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 중 취약계층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참여 제한자

3.

약정개시일 3개월 이내에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참고

- 관련기업 :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장 주소지나 전화번호, 사업주 등이 같은 기업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
- 연계기업 : 지역자활센터 등

참여 제한자

4.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예외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등기임원이 된 경우

5.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추후 적발시 부정수급**

참여 제한자

혼인관계증명서
F-2, F-5, F-6 비자 확인

6. 외국인

예외 **결혼이민자**,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인 자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외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 미고용, 사무실 없음

8.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학생

예외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중 근로에 종사하는 자

지원비율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352,23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3%**(126,160원) = 1,478,390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50%	30% (30%+ 20%)
월지급액 (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478,390	1,035,150	887,270	887,270	739,390	443,630 (739,390)
	1일 6시간 근로자	1,110,860	777,600	666,510	666,510	555,430	333,250 (555,430)
	1일 4시간 근로자	735,860	515,100	441,510	441,510	367,930	220,750 (367,930)

* 참고: '17년 최저시급 6,470원

재심사기준

1 목표매출액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70%

6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50%

예시

목표
매출액

약정기간: 2017. 02.01~ 18. 01.31

1억

5개월 째 재심사 (6월 신청)

1억 X 70% X 50% = 35,000천원

8개월 째 재심사(9월 신청)

1억 X 70% X 70% = 49,000천원

재심사기준

2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6년 기준	946천원	1,081천원	1,217천원	1,352천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6년 기준	540천원	676천원	811천원	946천원

비제조업 재심사 1년차

예시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근로자	9	10	10	9	8	9	10
전체 참여자	4	5	5	4	3	4	5
취약계층 참여자	2	3	3	2	2	2	3
매출액	900천원	1,000천원	800천원	1,100천원	1,100천원	1,000천원	900천원

*비제조업 1년차 기준액: 540천원

6,800천원(7개월 매출 합산) / 65명(7개월 전체 근로자 합산)

= **1,040천원**

재심사기준

3 취약계층 고용비율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예외

- 일자리제공형: 50% 이상
- 종전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심사가 아닌 신규 신청

* 고용비율 산정 : 매월 말일 기준
* 재심사 기준: 월평균 30% 이상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최초 3개월 제외

지급시기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에 임금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
하면 **10일 이내** 지급
(후지급, 정산불요)

Q&A

이사를 했어요. 어떡하죠?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변경/훈련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가격 변경/ 당초 사업내용 변경
주된 사무소를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

Q&A

참여근로자가 퇴사를 했어요 ㅠㅠ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퇴사자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되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리 임금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A

'16년 기준 예시

예비 1년차, 주 4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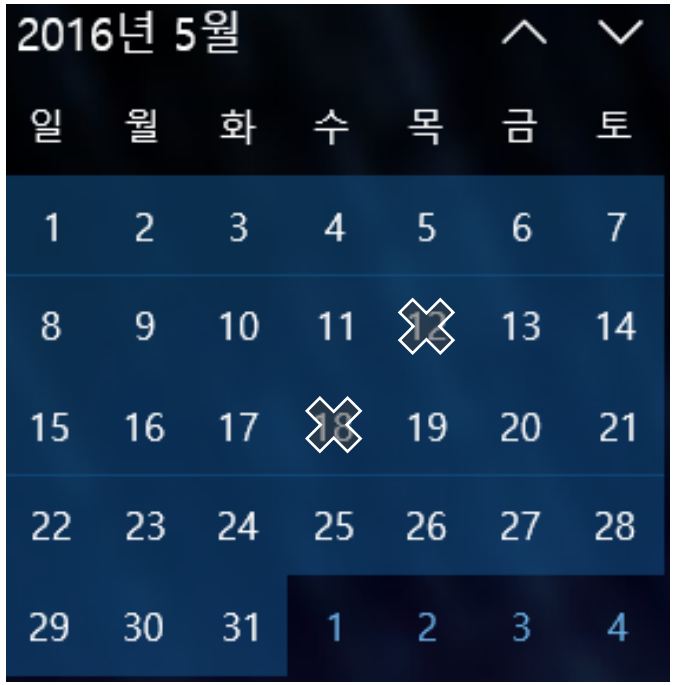

차감 시간

8h(12일)+8h(주휴수당)
8h(18일)+8h(주휴수당)

차감 금액

32시간 x 6470원 x 0.7 = 144,928

신청 금액

906,380원 - 144,928원 = 761,452원

Q&A

참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대체근로자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 휴가 기간 동안 한정해 계약기간 설정
! 기존 근로자 담당업무 동일하게 수행해야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

예비 1명, 인증 3명 지원

*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인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령자 1명 추가 지원 가능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지원 비율	90% →	80% →	80% →	70% →	50%

범 위

1 200만원 한도

01

-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및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단순 경리 및 서무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음

02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03

각 전문분야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범 위

1 200만원 한도

예시

구분	지원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예비 1년차(90%)	예비 2년차(80%)	인증 3년차(50%)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20만원	75만원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80만원	160만원	100만원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200만원 (한도)	150만원

범 위

2 250만원 한도

01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탁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제품 및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02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03

각 전문분야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 포함)

범 위

2 250만원 한도

예시

구분	지원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예비 1년차(90%)	예비 2년차(80%)	인증 3년차(50%)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80만원	160만원	100만원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25만원	200만원	125만원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5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150만원

03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예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인증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A유형 | 창업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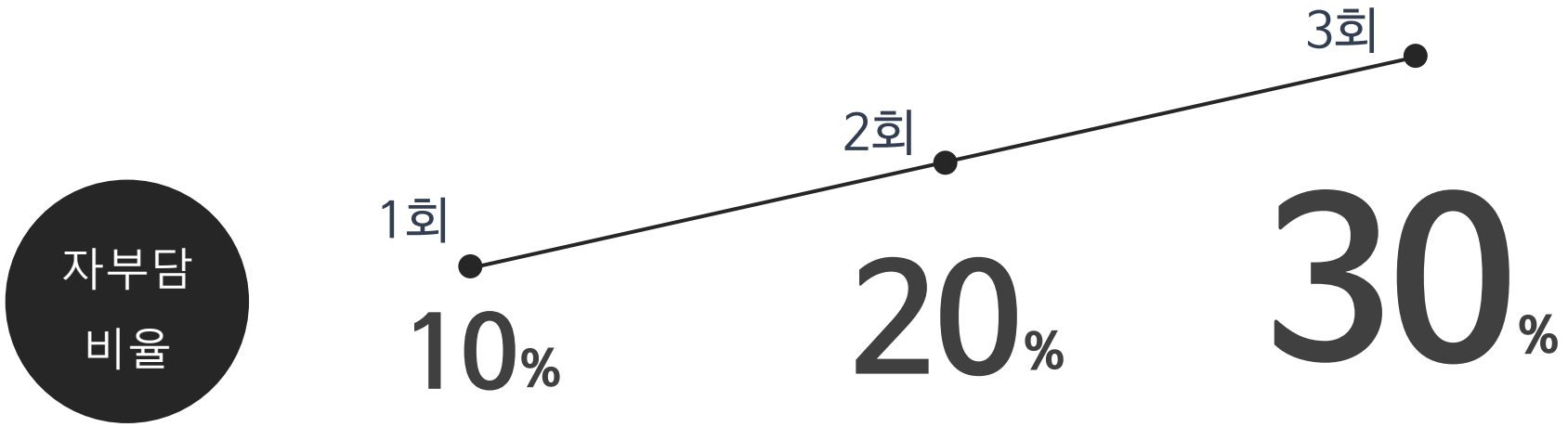

경영지원

기초컨설팅

기본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의 틀을 갖추도록 지원

세부 내용

수진여부 상관 없이
기업별 최대 3회 지원

1월 → **11월**

*상시 신청

1. 사전-집중-사후 코칭

- 사전코칭 : 기업진단
- 집중코칭 : 집중 컨설팅
- 사후코칭 : 사후 점검

2. 상시상담

- 유선, 서면 문의, 자문 등
- 지원기관을 통해 연계
- 전문상담기관 운영 예정(법률법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